

「파견 교환학생 규정」 신규조문대비표

2024. 4. 1. 전부개정 판 (시행 2024. 1. 1.) → 2025. 1. 6. 개정 판 (시행 2024. 12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91/compare?from=1529&to=1593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3:05:19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자격) 파견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육 이념을 준수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1.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. 단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. 2. 전학년 평균평점 3.2 이상인 자 3.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(단, 필요시 대외국제처장이 어학성적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) 가. 영어권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 나. 중어권 신HSK 4급(180점)이상 다. 일본어권 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 4. 지도교수 혹은 학부(과)장 추천을 받은 자 5.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.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7. 기타 선발 자격은 교환학생 선발 내규에 따른다.	제2조(자격) 파견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육 이념을 준수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1.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. 단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. <u>단, 재학기간이란 9학점 이상의 학기를 말한다. <개정 2025-01-06></u> 2. 전학년 평균평점 3.2 이상인 자 3.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(단, 필요시 대외국제처장이 어학성적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) 가. 영어권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 나. 중어권 신HSK 4급(180점)이상 다. 일본어권 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 4. 지도교수 혹은 학부(과)장 추천을 받은 자 5.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.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7. 기타 선발 자격은 교환학생 선발 내규에 따른다.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파견 교환학생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1. 본교"를 "1.본교"로 하고, "남아있어야 한다."를 "남아있어야 한다. 단, 재학기간이란 9학점 이상의 학기를 말한다. <개정 2025-01-06>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